

- 찾아가는 복지, 항상 국민 곁에 있는 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사 여러분 2005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꼭 알아 두세요

각종 언론을 통해 2005년 달라지는 사회복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정책들로 구성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장애인, 노인, 보육 분야에서도 이전보다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사회복지 분야별 주요 시행 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초생활

❶ 최저생계비 평균 8.9% 인상

가구별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비도 함께 인상. 2인 가족 609,842원▶668,504원 (9.6%), 3인 가족 8.2%, 4인 가족, 7.7% 상승

❷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 가족구성원 중 특히 보호가 필요한 자만 수급자로 책정하는 특례 확대. 한시적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홀로된 며느리, 사위의 경우 시부모, 장인, 장모에 대한 부양의무 해소

❸ 소외계층(저소득 가정) 지원강화

12세 미만 저소득 아동에 대한 의료·아동양육비와 지역 아동센터가 확대되고 방학 중 아동급식 늘림. 희귀난치성 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계속 지원됨. 기초생활수급노인(65세 이상), 저소득 노인(72세 이상)에 대한 경로급과 의료비(무료암검진, 백내장, 망막중수술)지원 확대

❹ 위기가정 긴급지원내용 강화

수급자 결정 전 긴급 지원의 경우 전담공무원의 상담 후 우선 지원하고, 전국 읍면동에 복지도우미를 1명씩 배치함.



사회보험

●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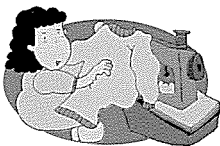
MRI, 소이증, 안면화상, 연골무형성증, 인공와우 등이 건강보험적용대상에 새로 추가되며, 자연분만·미숙아 입원, 희귀난치성질환의 본인부담 경감대상으로 확대. 요양급여 심사청구제도는 무조건 이의 신청을 하던 것에서 올해부터 이의 신청 전 심사부서에 추가적 심사를 청구하도록 하며,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업무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두곳에서 가능

● 농어민·희귀난치성 질환자 부담 경감

농어민들의 건강보험료가 30%에서 40%로 경감. 희귀난치성 질환은 1월중에 척추갈림증 등 25개 질환에 대해 환자 부담액이 줄어들고, 상반기 중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기간이 현 90일에서 180일로 대폭 연장

● 국민연금 대상 및 보험료 부과등급 현실화

보험료 부과소득 체계 현실화를 위해 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사업장 근로자로 전환, 기금운용위원회와 본부의 독립 및 전문성이 강화됨.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적립금 규모를 설정, 보험료를 조정 등 고용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장애인 복지

● 1급 ~ 6급 장애인 전체로 수당 확대 및 지급방법 개선
 현행 1~2급(2만원) 지원에서 3~6급(6만원)까지 전면적으로 수당이 확대 지급, 수당 신청 다음 달부터 지급되던 것이 수당 지급 달로 바뀌게 15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는 당월분 장애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이후에는 반액만 지급

●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

의원, 치과, 이용원, 미용실, 교도소, 구치소를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정신장애인 시설 확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커뮤니티시설을 101개▶106개, 정신보건센터 117개▶126개소로 늘림



노인 복지

● 만성질환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치매 증풍 등 만성질환 노인들을 위한 전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등 의료복지시설이 91개소 확대되어 총 538개소로 늘어남. 지역사회 차원의 보호를 위해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을 56소 신규 확충 예정.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와 실버산업 육성

2007년에 시행 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고 실버산업 육성과 고령친화적 신사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가정·보육·아동

● 건강가정지원센터 6개 지역 확대 설치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3개▶6개 확대 운영. 중앙은 5년 단위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각 지자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 지자체 의무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전문 건강가정사 배치 관련 사업 지원

● **보육시설 및 전문 인력, 서비스 강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 등급이 2등급▶3등급으로 변경, 보육시설 수장의 자격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보육교사는 '보육업무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 4월 이후 국가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국가에서 검정 후 자격증 발급함.

보육시설 설치 기준은 기존시설을 제외하고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내 떨어진 곳, 정원 300명 초과 못하고, 영유아 1인당 3.63㎡에서 4.29㎡로 늘리고 보육실 면적은 영유아 1인당 모두 2.64㎡로 변경. 가정보육시설은 단독, 공동주택에만 설치가능, 1층에 설치 원칙, 건물전체가 보육시설이거나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외로 2,3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정

● **보육료 지원 확대**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인정액 204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0-1세는 월 25만 7천원▶29만 9천원, 2세는 21만 2천원▶24만 7천원, 3-5세는 13만 1천원▶15만 3천원으로 인상. 지원비율은 부모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현재 100,60,40% 3계층에서 100,80,60,30% 4계층으로 확대

●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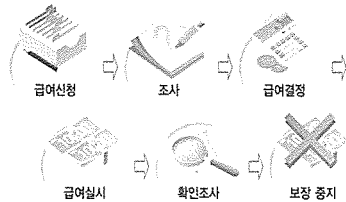
이동학대예방센터 확대 개편,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 신청 기관 대상 1년간 한국어성개발원 위탁 운영,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민간시설 영아반 교사 인건비 확대, 호주제 폐지 추진, '모자보건 선도보건소'가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으로 명칭 바뀌어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에게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상담하세요" 사랑의 권유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이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더욱 편리해진 수급 신청 절차>



<신청 방법>

| 사회복지 담당자 방문 |
각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사회복지 담당자가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SOS상담소 위기가정 상담 1688-1004 |
SOS상담소 전용 전화를 통해 위기 가정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복지도우미가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어려움을 파악하는 서비스 제공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 홈페이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트 <http://biss.mohw.go.kr>
- | 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02)503-7565~6
- 각 도청, 시청, 구청, 읍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
- | 시·군·구 종합복지 상담 | 국번 없이 1688-1004



보건·의료

● **미숙아 의료비 차등 지원**

1인당 최고 300만원을 주던 미숙아 의료비가 출생 시 체중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

● **기 타**

회귀·난치성 질환 지원 대상 71종으로 확대, 조기암검진 및 저소득 소아암 지원대상 확대, 한방지역보건사업을 하는 보건소가 173개▶177개로 확대, 수두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 과자류에 영양성분과 어린이 물약에 눈금표시 의무화, 카페인 ml 0.15mg 이상 들어있는 경우 '고카페인 함유' 문구 표시, 담배값이 값당 500원 인상, 건강증진부담금 154원▶354원, 금연 클리닉 전국 246개소 보건소 설치 운영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엠파스 뉴스

